

2017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시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2017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는 인사·복무, 시설운영, 예산회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등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해 총 6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4건, 주의 2건)를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7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116 (2016. 12. 30.)]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3명
- 감사대상 :

대상기관	감사 대상 범위	감사기간
연 수 구 청 소 년 수 련 관	2015. 1월 ~ 2017. 10월 추진업무 전반	2017. 11. 27. ~ 12. 1. (5일)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시설운영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전반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자체운영규정
인사 및 복무	종사자의 상근 여부 및 근무상황부 관리 직원 채용, 호봉책정, 급여,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리여부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여부
예산회계	시설예산편성 절차 및 심의사항 예산과목 편성 적정 및 회계장부 비치, 증빙서류 적정 수입금 수납처리 적정 여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 공사 및 물품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
주요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진로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열린문화행사 등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1 기관현황

☐ 일반현황

(단위 : 명)

소재지	직원현황								
	계	관장	부장	팀장	대리	주임	팀원	PM	SM
연수구 앵고개로 132 (동춘동)	16	1	1	1	3	2	5	1	2
- 시설장 : ○○○○ - 위탁운영 : (○)○○○○○○○○○○○○○○○○ (2017.1.1. ~ 2019.12.31.)									

□ 관련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비고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2,630,036	767,507	782,750	1,079,779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진로지원센터 포함

□ 주요사업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유무료	대상인원 (명)
문화예술 활동 (3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Show me the Youth.vol.4」	초,중,고	2017.04.	3회/ 4~8시간	무료	600명
	청소년올림픽 「청청데이」	초,중,고	2016.05~10.	13회/ 4~8시간	무료	383명
	청소년 마을축제 「꿈틀장터」	청소년 및 지역주민	2017.04~10.	10회/ 8시간	무료	
청소년 수련활동 (5개)	청소년 녹색성장 프로그램 「green Y」	중,고	2017.03~12.	14회/ 4시간	유료	375명
	역사교육프로그램 「역사스토리텔러」	중,고	2017.03~12.	월1회 10회기/4시간	무료	300명
	청소년캠프 「꽃보다 10대」	중,고	2017.11.	4회 /4~8시간	유료	진행중
	일일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예체능」	초,중,고	2017.03~12.	15회/ 2~4시간	유료	1,000명
	MBC1318 사랑의 열매캠프 지원사업	중,고,대	2017.03~08.	2회/ 4~8시간	유료	1,100명
청소년 참여·자치 (4개)	청소년 운영위원회 「P.O.T」	초,중,고,대	2017.01~12.	24회/ 4~8시간	무료	454명
	동아리지원사업 「동행」	초,중,고	2017.03~12	292회/ 4~8시간	무료	3,523명
	연수구동아리지원사업 「H/L Crew」	중,고	2017.03~11.	16회/ 4~8시간	무료	224명
	청년서포터즈 「청춘다움」	대	2017.03~12.	21회/ 4~8시간	무료	97명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유무료	대상인원 (명)
특화사업 (4개)	‘행복한 연수’를 위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T.F.Y(Teach For Yeonsu)」	초, 중, 고	2017.01~12.	연중수시	무료	1,500명
	청소년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Youth Global Leadership Program 4기	중, 고	2016.11 ~2017.10.	주1회(수시)/ 4~8시간	유료	700명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중, 고	2017.03~12	주1회(상시)/ 3시간	무료	진행중
	청소년진로경제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마을 만들기」	중, 고	2017.10.~11.	5회(수시)/ 8시간	무료	200명
방과후 아카데미 (4개)	교과학습	중1,2 (40명)	2017.01~12.	주4시수	무료	7,091명
	전문체험		2017.01~12.	주4시수	무료	
	토요체험		2017.01~12.	12회 (월1회 5사수)	무료	
	여름캠프		2017.01~12.	연1회	무료	
진로지원 센터 (3개)	진로플랫폼 구성 직업체험연계사업 및 기자단 운영	청소년 대학생	연중	연81회	무료	2,374명
	진로탐색 직업탐색,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체험, 진로박람회	초등학생 청소년	연중	연17회	무료	3,913명
	진로설계 진로통합, 대학탐방, 대학체험	중학생 고등학생	연중	연9회	무료	163명

2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 : 해당없음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1992. 11월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처음 개관하였고, 1998. 7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인천시 소유로 2년마다 갱신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 ▶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2022년까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플랫폼(Platform)을 활성화하여 연수구 내 청소년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토대로 청소년 국제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중연계되는 청소년 정보 및 프로그램의 장 마련 등의 핵심추진과제를 수행하고, 학교·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오피니언 리더 등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감사실에서는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여 올해 처음으로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규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서 미비한 점이 나타났다.
- ▶ 2017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는 인사·복무, 시설운영, 예산회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등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해 총 6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4건, 주의 2건)를 처분 요구하고자 한다.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 현황별

구 분	처분 현황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원)	신분상 조치(건)
		시정	주의	개선	회수	
연 수 구 청 소 년 수 련 관	6	4	2	-	-	-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시설운영	예산회계	추진사업
연 수 구 청 소 년 수 련 관	6	3	1	2

3 처분요구 목록

연 번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재정상	
	계	총 6건 (시정 4건, 주의 2건)			
1	시설운영 (3건)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여비지급기준	시정		규정 개정
2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 미운영(2015~2017)	시정		규정 반영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복합기 외 3개 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록	시정		대장 등록
4	회계분야 (1건)	행사물품대여 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꿈틀장터 등 행사물품대여 시 계약체결이 아닌 일반지출 집행	주의		
5	사업분야 (2건)	방과후아카데미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시 내부결재 없이 7명중 2명 선정하여 면접실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미징구	주의		
6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및 통학차량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서류 및 대금지급 시 서류 미비 수의계약 현황 미공개	시정		공개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시설운영 분야

1.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III.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수련 시설 유형별 설립취지 및 기능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제규정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에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 5. 7.자로 개정된 운영규정을 시설운영에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①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미반영

-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3.21.)을 준용하여 이용료 반환기준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규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② 출장 및 여비 지급 규정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의 출장 및 여비 지급 규정 제2조에서는 여비를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전일여비로 구분하였고, 제4조에 따르면 교통비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비는 출장기간동안의 숙박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

차량 및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교통비 및 일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제8조에서 일비는 시외 출장 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외출장여비 및 전일여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차량 및 기관차량 이용 시 교통비 및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

2.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연수구청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제16조 【예산의 승인】에 의하면 수련관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산】에 의하면 수련관장은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법인 이사장 및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연수구청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에서도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운영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 【회의】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의 위탁)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장부의 종류)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물품관리규정] 제25조 【장부비치】에 따르면 물품의 수입과 출급 시 그 내역을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재하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복합기 등 4건의 물품 구입 건에 대해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예산 · 회계 분야

1. 행사물품대여 시 계약체결에 관한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일반운영비(임차료)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꿈틀장터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대여 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7년 청소년 마을축제 <꿈틀장터2> 운영비 (물품대여비) 등 총 4건, 14,800천원의 사업비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사업분야

1. 방과후아카데미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2017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강사인력 확보 및 관리에 따르면 전문체험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를 선발 운영하고, 학습지원활동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하고, 강사 채용 시 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강사진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연봉제직원 및 강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에서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제9조 채용기준을 참조하여 이에 준한 강사와 면접을 통하여 본 수련관의 운영원칙 및 연수구 지역 사회를 설명하여 교육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채용기준과 본 수련관의 원칙에 부합할 때에는 강사채용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강사채용 내부결재서류에는 이력서, 해당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완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7년 방과후아카데미 한국사 강사 채용시 수련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통해 7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1차 서류심사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 임의로 2명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그 중에 1명을 강사로 채용하는 등 2017년 상반기 가정정책과 현장 점검 시 지적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재학 등),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및 통학차량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① 계약서류 미비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회계관리규정 제6장 제53조에는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는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2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 서류 미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사항 미공개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및 통학차량 임대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계약보증이행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매월 급식비 및 차량임차대금을 지급하면서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수의계약 체결 후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V

우수 사례

1

청소년멘토링 TFY(Teach For Yeonsu)

- ❖ 멘토링 활동을 통한 청소년(멘티)의 학습, 진로, 정서지지체계를 형성하고 멘토에게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인재를 활용한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복한 연수'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 1. ~ 2017. 12. 31.
- 장 소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및 각 활동장소
- 대 상
 - 멘 토 : 전문직종 근로자 및 대학생
 - 멘 티 : 관내 초등 ~ 고등 청소년
- 운영방법 :
 - 멘토(20명)-멘티(20명) 희망활동별 1:1 결연
 - 멘토링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多:多멘토링 진행
 - 명사를 초청하여 연수구 초·중·고 1:多 멘토링 강의 진행
- 참가비용 : 무료

☐ 사업내용

○ 참여인원 :

- 2017년 : 실인원 59명 / 연인원 455명(2017년 9월 기준)
- 관내 초, 중, 고등청소년(멘티) 29명
- 대학생 및 직업인(멘토) 30명

○ 활동내용 :

- 멘토-멘티 1:1 멘토링 운영(교과, 예체능, 외국어, 인성, 진로 등 5개 분야)
-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운영(문화활동, 유관기관 방문 멘토링 등)
- 멘토링 콘서트 운영

☐ 추진성과

-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 멘티의 건강한 성장 지원
- 학습 교재, 문화생활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멘토와 멘티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연간활동을 진행
- ○○○○, ○○○○○○○○ 등에서 멘토를 지원하여 지역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다양한 멘토링 활동 방식으로 다양한 층의 멘토, 멘티 참여
 - 명사초청콘서트, 1:1 멘토링, 대학생 동아리 등의 구성으로 장기 참여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

☐ 향후계획

- 지역 예비사회인들의 멘토링 참여기회 확대
 - 명사초청콘서트 4회 진행
 - 문화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수시 참여기회 제공
- 연 3회 이상 1:1 및 동아리 연합활동 진행

VI

컨설팅감사(개선사항)

분야	현실태	개선사항	비고
운영기준	-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은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 임. - 한편, 구 조례 제6조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16.11.16제정) -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이에 대한 세부지침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시달 필요 - 또한, 법령, 조례, 지침 등 운영 기준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예산회계	- 보조금(국·시·구비) 및 법인전입금으로 총 15개분야 29종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7년 예산 1,079,779천원) - 다양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 및 지출을 수기(엑셀) 관리함에 따라 정확한 관리가 어려우며,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임.	- 정확하고 투명한 수입·지출 관리를 위해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실정에 맞는 예산·회계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운영 필요 -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 시 3년마다 위탁계약 체결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 관리 필요	